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강정애 (국가보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경찰·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등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0356호, 2024. 2. 27. 공포, 2025. 2. 28. 시행)됨에 따라,

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하여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징계처분의 종류를 **강등, 정직 및 감봉**으로 정하고, 비위사실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경찰청, 소방청, 및 해양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법 제5조제5항제4호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을 말한다.

1. 징계처분 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9조에 따른 강등, 정직 및 감봉
2. 비위사실 등 :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(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

제1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3조제5항에 따른 징계처분이나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안장 대상자의 요건) ① ~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3조(안장 대상자의 요건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법 제5조제5항제4호의2에서</u> <u>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처</u> <u>분 또는 비위사실 등”이란 다음</u> <u>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처분</u> <u>또는 비위사실 등을 말한다.</u> 1. 징계처분 : 「국가공무원법」 <u>제79조에 따른 강등, 정직 및</u> <u>감봉</u> 2. 비위사실 등 :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 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(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포 함한다)
⑤ (생 략) 제13조(심의위원회의 심의) ① 제 12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 장등(국립묘지로부터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의 신청을 받은 국가 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 제13조(심의위원회의 심의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에 심의를 의뢰하고, 그 사실을 안장등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 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 다. 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 ② · ③ (생 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4. 제3조제5항에 따른 징계처분</u> <u>이나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</u> <u>우</u>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551